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 02. 0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01.1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01.22.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의안번호 제2555호).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홍보 및 네트워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나. 사업대상 : 양천구 등록장애인 및 가족 (2020.12.기준 17,558명)

다. 위탁기간 : 3년 (2021. 8. ~ 2024. 7.)

라. 위탁 사무

-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일체 및 시설관리
- 장애인가족 상담·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긴급 돌봄서비스, 홍보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위탁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하여“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사 선정

바. 위탁예산 : 112백만원(시비 50 : 구비 50) [6개월]

사.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주요시설	운영인력
양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양천구 신월동 581-1 외 38필지 (신월6동 복합청사 4층)	73.96m ²	사무실, 상담실 등	4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1)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천구 장애인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2017년부터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구 이외 2개에서도 설치·운영할 계획임

【표 1】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주소	수탁기관	인력	개소시기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열빌딩 304호(당산동3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7명 (센터장1,직원6)	'17.8월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자양로 46, 301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7.9월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8층 802호(답십리동, 클래식타워)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7.9월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미주빌딩 4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7.8월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8, 202호(성산동,삼라마이더스)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7.8월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리동 4층 7.8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7.9월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118 라성아카데미타워 11층 1122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7월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1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9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826호(수서동 수서현대벤처빌)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10월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효령로55길 22 205호(서초동,그린빌오피스텔)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10월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해로 63길 43 행정지원센터 B101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12월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탑골로2길 59-9, 2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8.11월
동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505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9. 9월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랑구 상봉로20길 29(망우동, 성은하우스) 202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9.10월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로구 안양천로 552(개봉2빌몰퍼프장 5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9.10월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산구 서빙고로245 (서빙고동)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2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19.11월
강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동구 상일로12길95, 4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 직원3)	'20.2월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종암로 129 청한상가 305호	성북장애인단체 연합회	총 4명 (센터장1, 직원3)	'20.2월

영등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146, 4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직원3)	'20.11월
관악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관악센츄리타워 4층 401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직원3)	'20.12월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동남로 28길 40, 4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직원3)	'20.12월
강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오현로 199-9, 3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직원3)	'20.11월
종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삼청로91-1, 2층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총 4명 (센터장1,직원3)	'20.11월

-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신월6동 복합청사 내 4층에 위치할 예정으로 항공기소음대책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을 구매 할 예정임.
-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6개월에 1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구비 50% 부담 예정임.
- 그 밖에, 제275회 2차 정례회에서 나상희 의원이 발의하였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됨.

2) 법적 근거 및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살펴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타당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3)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 양천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수는 17,558명으로 양천구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양천구 등록장애인 및 가족

(2020.12기준, 단위:명, %)

구 분	총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이상
장애인수	17,558	229	427	704	790	1,652	2,895	4,174	4,018	2,669
양천구 인구수	454,251	31,552	50,872	59,774	57,820	78,993	76,495	57,551	28,593	12,601
구성비율	3.9	0.7	0.8	1.2	1.4	2.1	3.8	7.3	14.1	21.2

○ 위탁기간은 3년(2021. 8. ~ 2024. 7.), 위탁예산은 6개월 1억 1,200만원(시비 50 : 구비 50)을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시책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사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지원비용 및 매칭비율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마찬가지로, 본 사업의 경우에도 향후에 지원비용 및 매칭비율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천구 장애인가족센터는 신월6동 복합청사 4층(73.96㎡)에 위치할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4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 홍보 및 네트워킹, 긴급돌봄서비스 등임.

【표 3】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운영인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양천구 신월6동 581-1 외 38필지 (신월6동 복합청사 4층)	73.96㎡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등	4명 이내

청사 및 배치도



신월6동 복합청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면도(4층)

4) 전체 의견

- 본 동의안은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임

관계법령 발췌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